

(12)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공개된 국제출원

(1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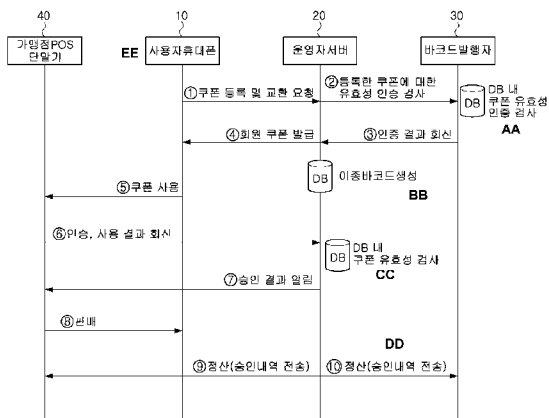
(10) 국제공개번호
WO 2014/017762 A1

(43) 국제공개일
2014년 1월 30일 (30.01.2014)

- (51) 국제특허분류: G06Q 20/40 (2012.01) G06K 7/10 (2006.01)
G06Q 20/06 (2012.01)
 - (21) 국제출원번호: PCT/KR2013/006168
 - (22) 국제출원일: 2013년 7월 10일 (10.07.2013)
 - (25) 출원언어: 한국어
 - (26) 공개언어: 한국어
 - (30) 우선권정보: 10-2012-0080697 2012년 7월 24일 (24.07.2012) KR
 - (71) 출원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SK PLANET CO., LTD.) [KR/KR]; 100-844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Seoul (KR).
 - (72) 발명자: 정기원 (CHONG, Ki Won); 412-7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GS아파트 546동 406호, Gyeonggi-do (KR). 백기현 (PAEK, Ki Hyun); 411-72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차현대홈타운 305동 804호, Gyeonggi-do (KR).
 - (74) 대리인: 전종학 (JEON, Jong Hag); 135-717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2-6 성지3차빌딩 20층(대표:2009호), Seoul (KR).
 - (81)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AE, AG, AL, AM, AO, AT, AU, AZ, BA, BB, BG, BH, BN, BR, BW, BY, BZ, CA, CH, CL, CN, CO, CR, CU, CZ, DE, DK, DM, DO, DZ, EC, EE, EG, ES, FI, GB, GD, GE, GH, GM, GT, HN, HR, HU, ID, IL, IN, IS, JP, KE, KG, KN, KP, KZ, LA, LC, LK, LR, LS, LT, LU, LY, MA, MD, ME, MG, MK, MN, MW, MX, MY, MZ, NA, NG, NI, NO, NZ, OM, PA, PE, PG, PH, PL, PT, QA, RO, RS, RU, RW, SC, SD, SE, SG, SK, SL, SM, ST, SV, SY, TH, TJ, TM, TN, TR, TT, TZ, UA, UG, US, UZ, VC, VN, ZA, ZM, ZW.
 - (84)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ARIPO (BW, GH, GM, KE, LR, LS, MW, MZ, NA, RW, SD, SL, SZ, TZ, UG, ZM, ZW), 유라시아 (AM, AZ, BY, KG, KZ, RU, TJ, TM), 유럽 (AL, AT, BE, BG, CH, CY, CZ, DE, DK, EE, ES, FI, FR, GB, GR, HR, HU, IE, IS, IT, LT, LU, LV, MC, MK, MT, NL, NO, PL, PT, RO, RS, SE, SI, SK, SM, TR), OAPI (BF, BJ, CF, CG, CI, CM, GA, GN, GQ, GW, KM, ML, MR, NE, SN, TD, TG).
-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조약 제 21 조(3))

(54) Title: SYSTEM AND METHOD USING ONE BUTTON FOR INTEGRATED AUTHENTICATION/APPROVAL OF HETEROGENEOUS BARCODES

(54) 발명의 명칭 : 원버튼을 이용한 이종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



- 1 ... Coupon registration and exchange request
- 2 ... Validity authentication check for registered coupon
- 3 ... Reply with authentication check result
- 4 ... Issue membership coupons
- 5 ... Use coupons
- 6 ... Reply with authentication and use results
- 7 ... Provide notice of authentication result
- 8 ... Sale
- 9 ... Calculate (transmit authentication details)
- 20 ... Operator server
- 30 ... Barcode issuer
- 40 ... Franchise POS terminal
- AA ... Validity authentication check for coupons in DB
- BB ... Generate heterogeneous barcodes
- CC ... Coupon validity check for coupons in DB
- DD ... Calculate (transmit authentication details)
- EE ... User terminal

(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system and method using one button for the integrated authentication/approval of heterogeneous barcodes, which use an infrastructure of existing barcode authentication franchises without any changes, provide a single button integrated authentication/approval service for the heterogeneous barcodes, and enable the barcodes on items such as existing gift cards, coupons, prepaid cards, and credit cards owned by a user to be exchanged with heterogeneous barcodes through a gateway operator server and used.

(57) 요약서: 본 발명은 기존 바코드 인증 가맹점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종바코드에 대한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보유한 기존 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바코드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를 통해 이종바코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종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WO 2014/017762 A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

기술분야

- [1] 본 발명은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 바코드 인증 가맹점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중바코드에 대한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보유한 기존 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바코드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를 통해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 [2]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이동통신망의 속도(3G, LTE등)의 향상으로 쿠폰 및 결제 시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출시 및 사업화되고 있다.
- [3] 특히,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스마트폰에 간단히 내려받아 각종 쿠폰,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바코드 형태로 담아 지갑이 없이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E-Wallet) 서비스가 보급되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SKP의 “스마트월렛” KT”올레월렛”등 통신사 주도형과 삼성그룹의 “삼성월렛”, 각 카드사 및 은행 들의 전자지갑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 [4] 이와 같이 과거에는 “Paper, 시리얼번호, 플라스틱카드, chip카드” 등으로 한정되었던 쿠폰, 상품권, 카드 등의 서비스들이 “바코드 형태”로 다양한 전자지갑에 손쉽게 발행되고 있다.
- [5] 하지만, 바코드 발행사업자(쿠폰사, 상품권사, 카드사등)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가맹점 사용시 바코드 번호간 중복이 발생되어 거래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빈번한 거래실패로 이용자 및 가맹점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6] 또한, 바코드 발행사업자들이 발행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해당 POS 시스템의 기술적 연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바코드 발행사업자들이 바코드를 발행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존 POS 시스템과 서로 연동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바코드의 경우 복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7] 그리고, 바코드 발행사업자는 바코드 발행과 관리, 인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독자적으로 새로운 POS 시스템과 이에 연동되는 가맹점 POS 서버 및 단말기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8] [선행기술문헌]

- [9] [특허문헌]
 [10] (특허문헌 1)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12-0019964(2012.03.07)
 [11] (특허문헌 2)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106285(2012.01.18)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 [12]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기존 바코드 인증 가맹점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중바코드에 대한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된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13]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보유한 기존 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바코드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를 통해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 [14]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전자지갑에 상품권, 쿠폰들을 보유하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에 회원 가입을 통해 보유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고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휴대폰과; 사용자 휴대폰으로부터 교환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을 발행한 바코드 발행사들에게 유효성을 요청하고 유효성이 인증된 바코드에 대해 이중바코드로 교환 발행하여 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로부터 유효성 인증이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바코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사하고, 인증 결과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로 전송하는 바코드 발행사; 및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해 이중바코드 사용을 요청하면, 원버튼 서비스를 입력하고 이중바코드를 스캔하여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사용 승인된 이중바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산 처리하는 가맹점 POS 단말기;를 포함하되,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는 가맹점 POS 단말기로부터 원버튼 서비스를 통해 이중바코드에 대한 사용 승인이 요청되면 이중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 결과를 가맹점 POS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5] 본 발명의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는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중바코드의 승인 내역을 정산하고, 정산된 승인 내역을 해당 가맹점으로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이중바코드와 교환된 바코드의 발행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6] 본 발명의 상기 이중바코드는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 인증 검사가 완료된 바코드와 대응되는 통합 모바일 바코드로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를 구분하는

- 프리픽스와 OTP 코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7] 본 발명은 상기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발행되는 바코드는 선불카드, 신용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8] 본 발명의 다른 관점은 가맹점 POS 단말기와, 사용자 휴대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바코드 발행사로 이루어진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에 있어서, 1)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통해 전자지갑에 보유한 키프티콘,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여 이중바코드로 교환 요청하는 단계; 2) 교환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에 해당하는 바코드 발행사들에게 유효성을 요청하는 단계; 3) 바코드 발행사는 유효성이 요청된 바코드를 검사하여 인증하는 단계; 4) 상기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이 인증된 바코드에 대하여 이중바코드로 교환 발행하는 단계; 5) 상기 발행된 이중바코드를 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단계; 6)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는 사용자가 이중바코드 사용을 요청하면, 원 버튼 서비스를 입력하고 이중바코드를 스캔하여 상기 게이트웨이 서버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7) 상기 게이트웨이 서버는 요청된 이중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 결과를 가맹점 POS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8)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는 사용 승인된 이중바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9] 본 발명의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는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중바코드의 승인 내역을 정산하고, 정산된 승인 내역을 해당 가맹점으로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이중바코드와 교환된 바코드의 바코드 발행사에게 전송하는 9)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20] 본 발명의 상기 이중바코드는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 인증 검사가 완료된 바코드와 대응되는 통합 모바일 바코드로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를 구분하는 프리픽스와 OTP 코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21] 본 발명의 상기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발행되는 바코드는 선불카드, 신용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 [22]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서비스(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소셜커머스 등)이 출시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존 바코드 인증 가맹점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중바코드에 대한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게이트웨이를 관리 운영하는 운영자는 새로운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바코드 발행사들에 대한 영업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바코드 발행사들은 기존의 가맹점을 통해 바코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3] 본 발명은 다양한 바코드 발행사와 다양한 가맹점 간의 통신을 하나의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로 집중시켜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바코드 발행사들에게 있어서는 가맹점 영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4]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를 통해 프리픽스 번호로 바코드 발행사를 관리하고, OTP 코드정보를 포함하는 이중바코드를 통합 발행함으로써, 바코드 발행사들이 발행한 상품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바코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일된 보안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가맹점 이용시 바코드 중복으로 인한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5]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다.
- [26]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및 계약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 [27]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POS 단말기와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간의 통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 [28]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발행사의 등록 및 계약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 [29]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의 오류코드 처리 상태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 [30]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 [31]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32]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다.
- [33] 먼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서비스(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소셜커머스 등)이 출시되고 있는 환경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 휴대폰(10)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 바코드 발행사(30), 가맹점 POS 단말기(40)를 포함 구성된다.
- [34] 상기 사용자 휴대폰(10)은 전자지갑(E-Wallet)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전자지갑에 상품권, 쿠폰들을 보유하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의 홈페이지(미도시)에 회원 가입을 통해 보유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고 이를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 [35]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사용자 휴대폰(10)으로부터 교환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을 발행한 바코드 발행사(30)들에게 유효성을 요청하고 유효성이 인증된 바코드에 대해 이중바코드로 교환 발행하여 사용자 휴대폰(10)으로

- 전송한다.
- [36] 상기 바코드 발행사(30)는 도시되지 않은 바코드 발행 서버를 통해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부터 유효성 인증이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바코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사하고, 인증 결과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 전송한다.
- [37]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40)는 사용자가 휴대폰(10)을 통해 이중바코드 사용을 요청하면, 원버튼 서비스를 입력하고 이중바코드를 스캔하여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에 통합전문을 전송하여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통합전문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이중바코드에 부여된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산 처리한다.
- [38] 여기서,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가맹점 POS 단말기(40)로부터 원버튼 서비스를 통해 이중바코드에 대한 사용 승인이 요청되면, 도시되지 않은 이중바코드 발행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중바코드 발행정보를 근거로 이중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 결과를 가맹점 POS 단말기(40)로 전송한다.
- [39]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중바코드의 승인 내역을 정산하고, 정산된 승인 내역을 해당 가맹점으로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이중바코드와 교환된 바코드의 발행자에게 전송한다.
- [40] 상기 이중바코드는 바코드 발행사(30)로부터 유효성 인증 검사가 완료된 바코드와 대응되는 통합 모바일 바코드로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30)를 구분하는 프리픽스와 OTP(One Time Password) 코드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바코드 발행사(30)로부터 발행되는 바코드는 선불카드, 신용카드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OTP(One Time Password) 코드정보는 공지된 기술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41]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42]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및 계약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POS 단말기와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간의 통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발행사의 등록 및 계약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의 오류코드 처리 상태를 나타낸 흐름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43] 도 2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서비스(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소셜커머스 등)가 출시되고 있는 환경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가맹점과 바코드 발행사(ISSUER),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사용자로 크게 구분된다.

- [44] 우선, 가맹점은 제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점을 의미하며, POS(Point Of Sales) 단말기(40)를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 또는 POS 단말기(40)를 가진 여러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기존 바코드 인증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중바코드에 대한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45] 상기 바코드 발행사(ISSUER)는 바코드를 발행하고 승인을 진행하는 업체로서, 상품권, 쿠폰,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포인트 결제 등 통신 상으로 결제를 담당하는 업체 또는 대행사로서, 도시되지 않은 바코드 발행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행된 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인증 결과를 전송한다.
- [46] 상기 게이트웨이(GateWay)는 상기 가맹점과 상기 바코드 발행사 간의 통신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핸드폰)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바코드를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원버튼을 이용한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를 의미한다.
- [47] 상기 사용자는 가맹점 POS 단말기(40)를 통해 원버튼을 이용한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사용자가 소지한 휴대폰(10)에는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전자지갑에 상품권, 쿠폰들을 보유하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통해 보유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고, 이를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 [48]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및 계약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 기존 바코드 인증이 이루어지는 가맹점은 원버튼을 이용한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맹점 일반정보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에게 전달하고,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에서는 가맹점의 일반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과 동시에 가맹점 ID를 생성하여 가맹점 POS 단말기(40)로 POS 전문을 전달한다. 또한,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40)는 전달 받은 POS 전문을 설치하고,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와 시험 통신을 시도하여 POS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 [49] 또한, 과금 방식은 가맹점에서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과금을 결제 승인 건당 과금하는 종량제, 결제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금하는 정량제, 월 일정 금액을 과금하는 정액제를 선택할 수 있다.
- [50] 여기서, 가맹점의 일반정보는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게이트웨어 운영자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사항들은 이력정보로 저장 관리된다. 또한, 계약정보, 계약 과금 타입 정보, 계약정보 만료, 계약 과금 타입 변경 등도 운영자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사항들은 이력정보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된다. 가맹점이 추가된 경우에는 게이트웨어 운영자 서버(20)는 신규 가맹점 ID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한다.
- [51]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POS 단말기와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간의

통신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 가맹점 POS 단말기(40)를 통해 원버튼을 입력한 후, 쿠폰 또는 빌링 바코드를 리더기로 스캔하면 가맹점 POS 단말기(40)는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 최초전문을 전송한다.

- [52]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부터 최초전문 응답에 따라 조회인지, 승인인지를 가맹점 POS 단말기(40)의 화면에 표시되고, 상기 조회가 있는 응답을 수신한 경우, 조회 버튼이 가맹점 POS 단말기(40)의 화면에 표시되며, 이를 캐셔가 입력하면 가맹점 POS 단말기(40)로부터 조회 전문이 발송된다.
- [53] 또한, 조회 전문에 대한 응답 후 승인 버튼이 가맹점 POS 단말기(40)의 화면에 표시되며, 이를 캐셔가 입력하면 가맹점 POS 단말기(40)로부터 승인 전문이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 발송되고,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부터 승인 응답이 있게 되면 모든 통신이 완료되어 가맹점 POS 단말기(40)와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간 통신이 연동된다.
- [54]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발행사의 등록 및 계약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 기존 바코드를 발행하는 바코드 발행사(30)는 원버튼을 이용한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와 계약에 앞서 상기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와 단일 또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다.
- [55] 상기 바코드 발행사(30)는 일반정보와 계약된 가맹점의 ID 정보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에 전달하면,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에서는 바코드 발행사(30)의 일반정보와 가맹점 ID 매핑(Mapping)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저장하고, 바코드 발행사(30)의 프리픽스 번호를 생성하여 바코드 발행사(30)의 바코드 발행서버(미도시)로 통신전문을 전달함과 아울러, 시험 통신을 시도하여 바코드 발행서버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 [56] 또한, 과금 방식은 각 바코드 발행사(30) 별로 과금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종량제, 정량제, Share 형, 단위제 과금 타입을 선택하며, 과금처리 정산은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와 바코드 발행사(30)의 통신에서 결제 승인에 대해서만 과금 처리하여 정산한다.
- [57] 여기서, 일반정보는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게이트웨어 운영자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사항들은 이력정보로 저장 관리된다. 또한, 계약정보 만료, 계약 과금 타입 변경, 계약 정보 등도 운영자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사항들은 이력정보로 저장 관리된다.
- [58]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의 오류코드 처리 상태를 나타낸 흐름도로서,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가맹점 POS 단말기(40)로부터 전달된 전문이 초기전문인지 또는 공통전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59] 상기 전달된 전문이 초기전문인 경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조회 요청으로 판단하여 조회 요청된 이종바코드의 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종바코드 정보와 비교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사한 후, 유효 조회정보를 가맹점 POS 단말기(40)로 전달한다. 상기 조회서비스는 가맹점 POS 단말기(40)와

-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 간의 통신만으로 이루어진다.
- [60] 상기 전달된 전문이 공통전문인 경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이종바코드를 분석하여 프리픽스(Prefix) 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프리픽스 번호 오류를 판단한다. 여기서, 프리픽스 번호는 예를 들어 바코드의 앞 2자리로 제한한다.
- [61] 상기 프리픽스 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인 경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오류코드를 생성하여 가맹점 POS 단말기(40)에 전달하고, 프리픽스 번호가 등록된 번호인 경우 가맹점 POS 단말기(40)에서 받은 요청된 공통전문을 각 바코드 발행사(30)에 맞는 전문으로 변환하여 바코드 발행사(30)에게 유효성 여부를 조회하는 전문을 발송한다.
- [62] 상기 바코드 발행사(30)는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부터 유효성 여부를 조회하는 전문이 전달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바코드 정보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사한 후, 승인 또는 오류 응답전문을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 전달한다.
- [63]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바코드 발행사(30)로부터 승인 응답전문인 전달되면 공통전문으로 변환하여 해당 가맹점 POS 단말기(40)에 발송한다.
- [64]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바코드 발행사(30)로부터 오류 응답시 해당 바코드 발행사(30)의 오류 코드와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의 오류코드를 매핑하여 매핑된 오류코드를 해당 가맹점 POS 단말기에 전달한다.
- [65] 상기 매핑되는 대상 정보는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가맹점 관리 코드, 응답 코드와 바코드 발행사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가맹점 관리 코드 등이 매핑 처리된다.
- [66]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원버튼을 이용한 이종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폰(10)에 각종 쿠폰,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바코드형태로 담아 지갑이 없이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E-Wallet) 예를 들어, 스마트월릿, 올레월릿, 삼성월릿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통해 전자지갑에 보유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여 이종바코드로 교환 요청한다(1 단계).
- [67]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교환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에 해당하는 바코드 발행사(30)들에게 유효성 검토를 요청하고(2 단계), 상기 바코드 발행사(30)는 유효성이 요청된 바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바코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사하고, 인증 결과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 전송한다(3 단계).
- [68]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이 인증된 바코드에 대하여 이종바코드로 교환 발행하고, 상기 발행된 이종바코드를 사용자 휴대폰(10)으로 전송한다(4, 5 단계).
- [69]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40)는 사용자가 이종바코드 사용을 요청하면, 원버튼

- 을 입력하고 이종바코드를 스캔하여 상기 게이트웨이 서버)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6 단계).
- [70] 상기 게이트웨이 서버)는 요청된 이종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 결과를 가맹점 POS 단말기(40)로 전송하고(7 단계),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40)는 사용 승인된 이종바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8 단계).
- [71]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종바코드의 승인 내역을 정산하고, 정산된 승인 내역을 해당 가맹점으로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이종바코드와 교환된 바코드의 바코드 발행사(30)에게 전송하는(9 단계)를 더 포함한다.
- [72] 한편, 본 발명의 원버튼 기능은 다양한 바코드 발행사(30)와 다양한 가맹점 간의 통신을 하나의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로 집중시켜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바코드 발행사(30)들에게 있어서는 가맹점 영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73] 또한,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20)는 프리픽스 번호로 바코드 발행사(30)를 관리하고, OTP 코드정보를 포함하는 이종바코드를 통합 발행함으로써, 바코드 발행사들이 발행한 상품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적인 바코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일된 보안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가맹점 이용시 바코드 중복으로 인한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74]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서비스(상품권, 쿠폰, 선불카드, 신용카드, 소셜커머스 등)이 출시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존 바코드 인증 가맹점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종바코드에 대한 원버튼 통합 인증/승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과 게이트웨이를 관리 운영하는 서비스 운영자는 새로운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바코드 발행사들에 대한 영업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바코드 발행사들은 기존의 가맹점을 통해 바코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 [75]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청구범위

- [청구항 1]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전자지갑에 상품권, 쿠폰들을 보유하고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에 회원 가입을 통해 보유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고 이중바코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휴대폰과;
 사용자 휴대폰으로부터 교환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을 발행한 바코드 발행사들에게 유효성을 요청하고 유효성이 인증된 바코드에 대해 이중바코드로 교환 발행하여 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로부터 유효성 인증이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바코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사하고, 인증 결과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로 전송하는 바코드 발행사; 및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해 이중바코드 사용을 요청하면, 원버튼 서비스를 입력하고 이중바코드를 스캔하여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사용 승인된 이중바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산 처리하는 가맹점 POS 단말기;를 포함하되,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는 가맹점 POS 단말기로부터 원버튼 서비스를 통해 이중바코드에 대한 사용 승인이 요청되면 이중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 결과를 가맹점 POS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는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중바코드의 승인 내역을 정산하고, 정산된 승인 내역을 해당 가맹점으로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이중바코드와 교환된 바코드의 발행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바코드는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 인증 검사가 완료된 바코드와 대응되는 통합 모바일 바코드로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를 구분하는 프리픽스와 OTP 코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발행되는 바코드는 선불카드, 신용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시스템.

[청구항 5]

사용자 휴대폰과,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 바코드 발행사, 가맹점 POS 단말기로 이루어진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에 있어서,

1)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통해 전자지갑에 보유한 상품권, 쿠폰들의 번호를 등록하여 이중바코드로 교환 요청하는 단계와;

2) 교환 요청된 상품권, 쿠폰들에 해당하는 바코드 발행사들에게 유효성을 요청하는 단계;

3) 바코드 발행사는 유효성이 요청된 바코드를 검사하여 인증하는 단계;

4) 상기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이 인증된 바코드에 대하여 이중바코드로 교환 발행하는 단계;

5) 상기 발행된 이중바코드를 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단계;

6)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는 사용자가 이중바코드 사용을 요청하면, 원버튼 서비스를 입력하고 이중바코드를 스캔하여 상기 게이트웨이 서버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7) 상기 게이트웨이 서버는 요청된 이중바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 결과를 가맹점 POS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8) 상기 가맹점 POS 단말기는 사용 승인된 이중바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9) 상기 게이트웨이 운영자 서버는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중바코드의 승인 내역을 정산하고, 정산된 승인 내역을 해당 가맹점으로 전송함과 아울러, 상기 이중바코드와 교환된 바코드의 바코드 발행사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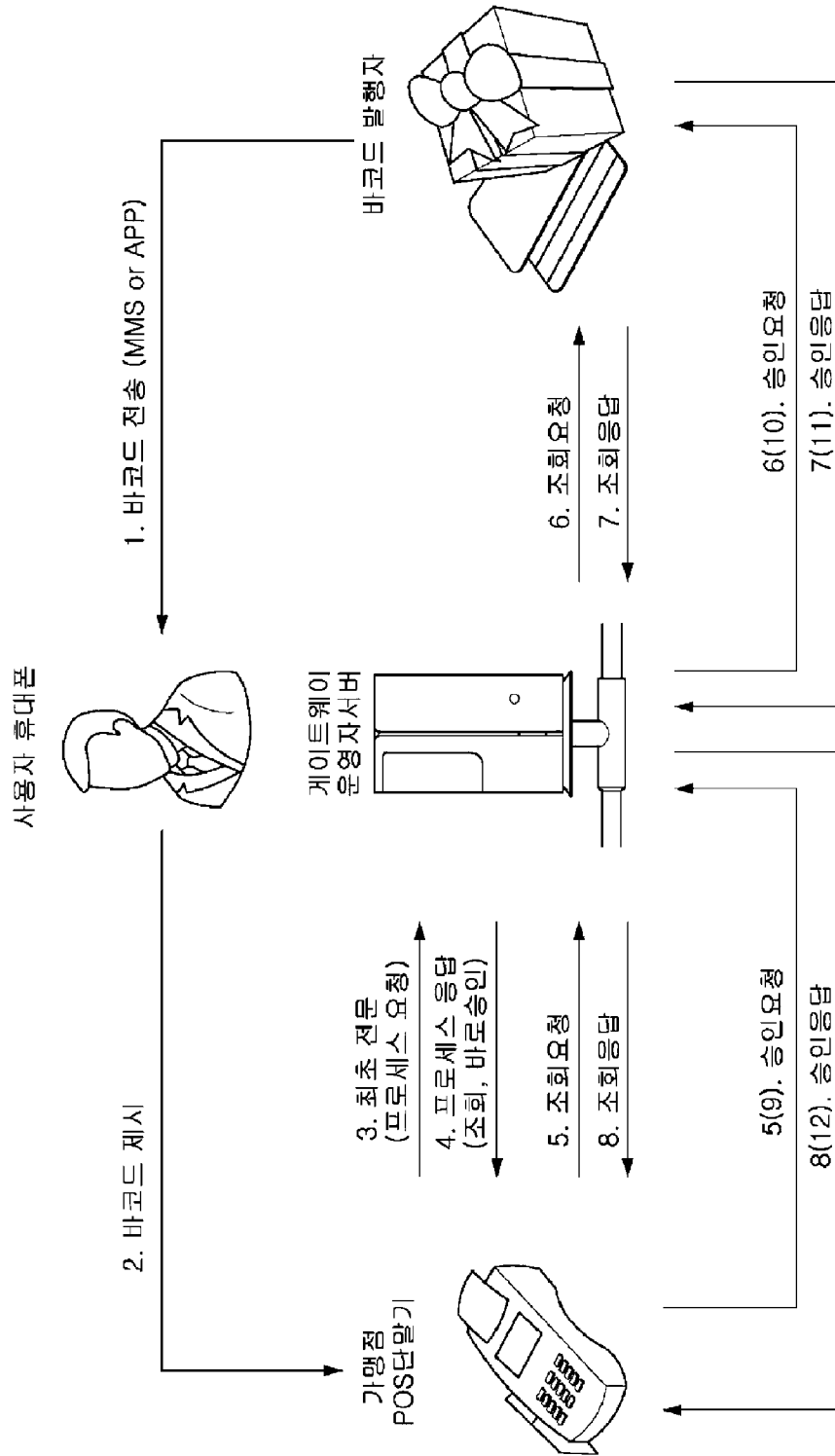
상기 이중바코드는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유효성 인증 검사가 완료된 바코드와 대응되는 통합 모바일 바코드로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를 구분하는 프리픽스와 OTP 코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

[청구항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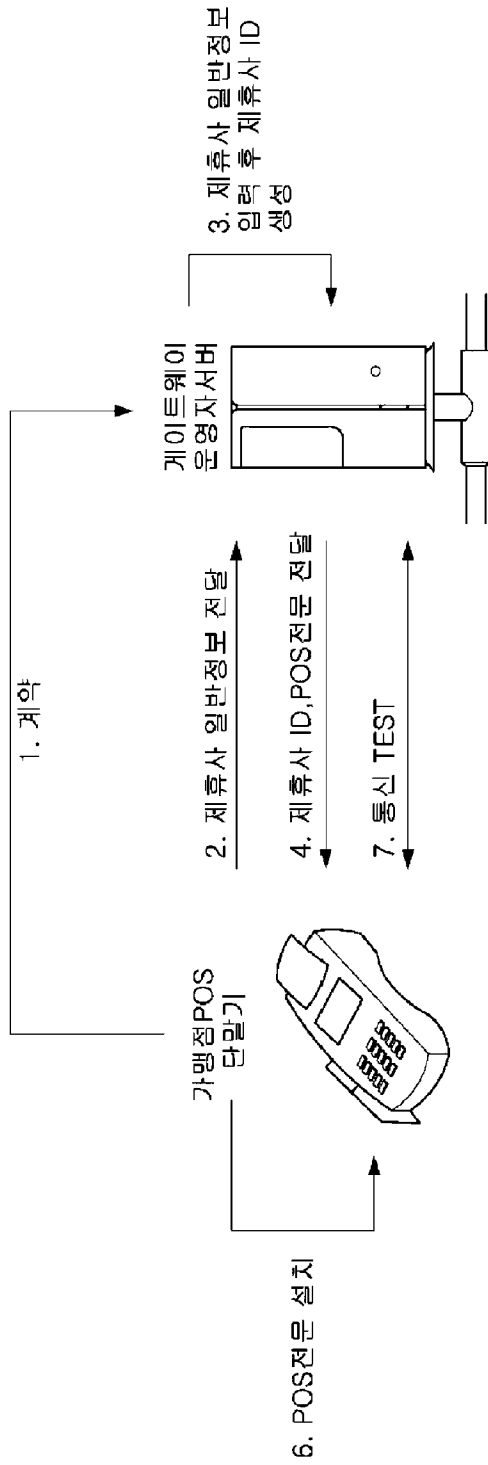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발행사로부터 발행되는 바코드는 선불카드,
신용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버튼을 이용한
이중바코드 통합 인증/승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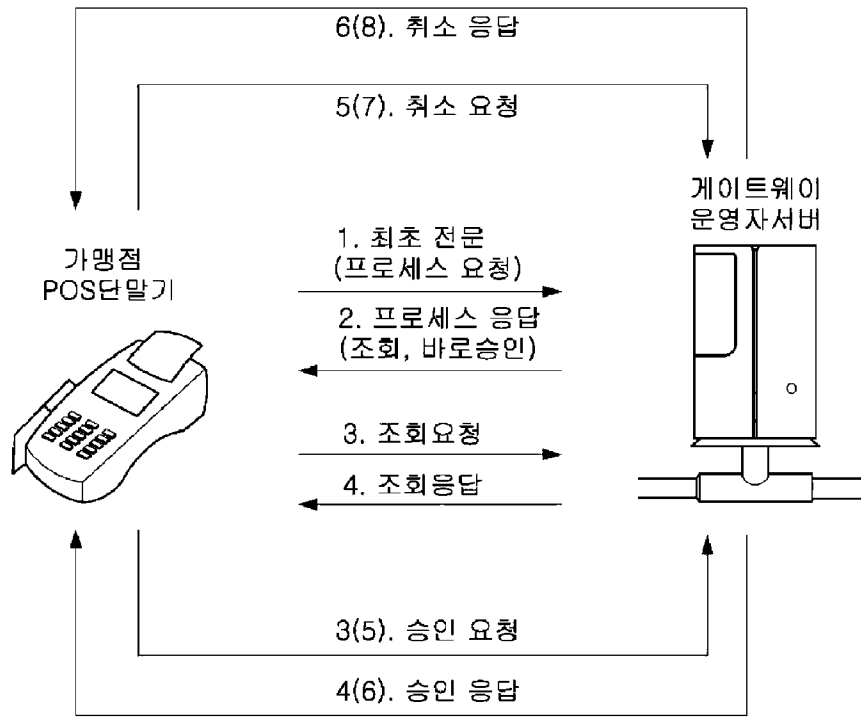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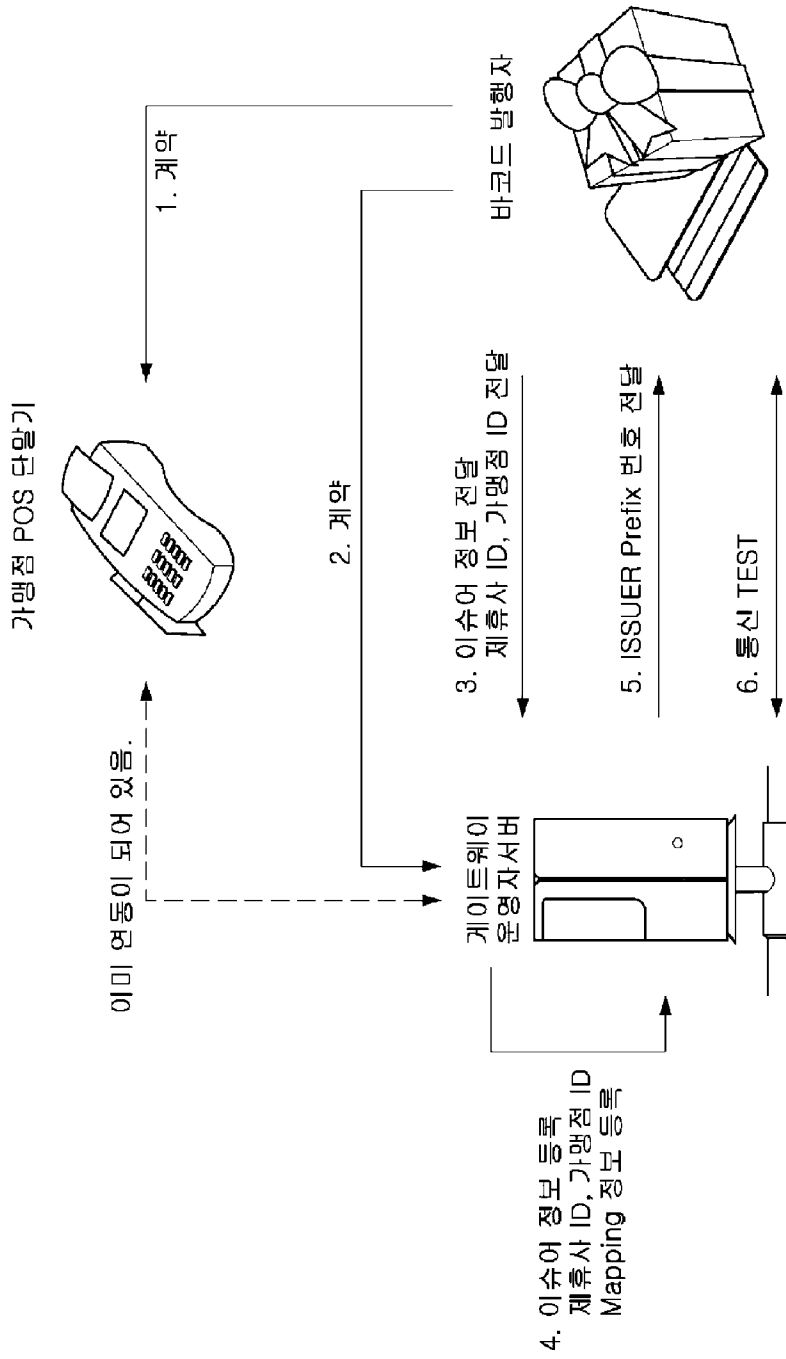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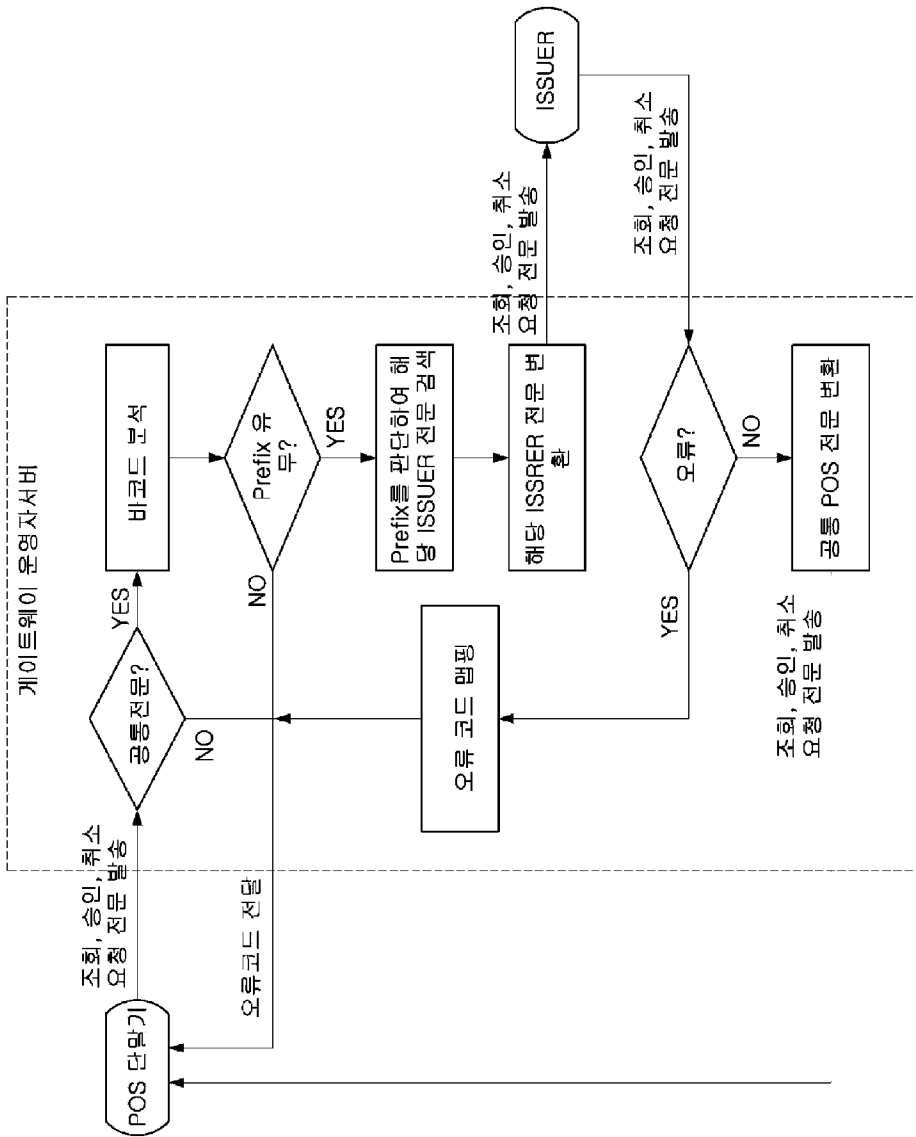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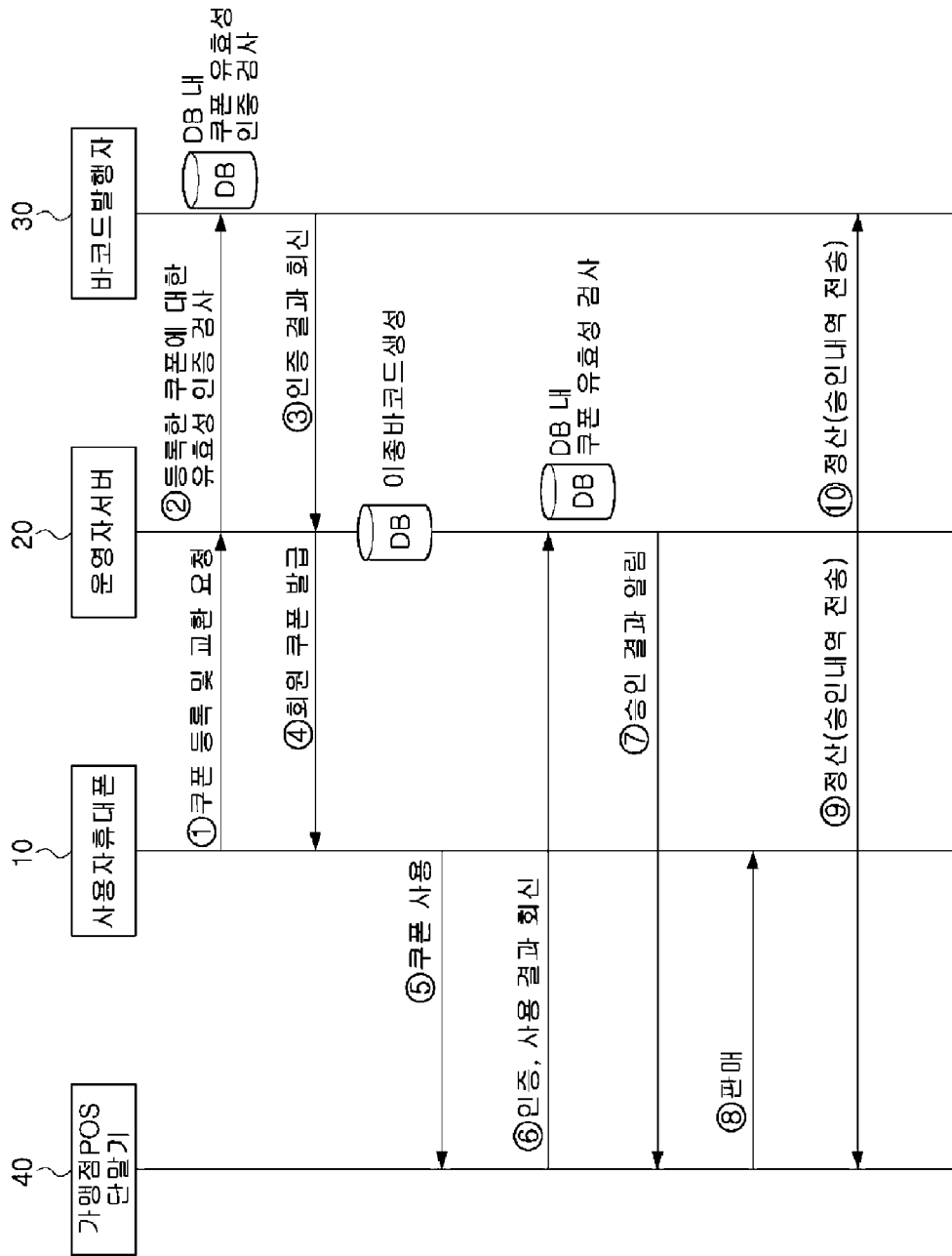
[Fig. 4]



[Fig. 5]



[Fig. 6]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2013/006168

A. CLASSIFICATION OF SUBJECT MATTER

G06Q 20/40(2012.01)i, G06Q 20/06(2012.01)i, G06K 7/10(2006.01)i

According t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or to both national classification and IPC

B. FIELDS SEARCHED

Minimum documentation searched (classification system followed by classification symbols)

G06Q 20/40

Documentation searched other than minimum document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documents are included in the fields searched
Korean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s: IPC as above
Japanese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s: IPC as above

Electronic data base consulted during the international search (name of data base and, where practicable, search terms used)

eKOMPASS (KIPO internal) & Keywords: barcode, code, transaction, payment, authentication, different, coupon, card, server, gateway, management, issuer, POS(point of sale)

C.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Category*	Citation of document, with indic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relevant passages	Relevant to claim No.
A	KR 10-2012-0046571 A (KT CORPORATION) 10 May 2012 See abstract, pages 7-10, claims 1-3, 6 and 7 and figures 1-4	1-8
A	KR 10-2010-0031436 A (SHIN, Gyo Jin) 22 March 2010 See abstract, pages 8, 9, claims 1, 3 and 7 and figures 1, 2	1-8
A	KR 10-2008-0044955 A (SK TELECOM CO., LTD.) 22 May 2008 See abstract, pages 5, 6, claims 1, 2 and figures 1-3	1-8
A	KR 10-2009-0010260 A (SK TELECOM CO., LTD.) 30 January 2009 See abstract, claims 10, 15 and figure 1	1-8



Further documents are listed in the continuation of Box C.



See patent family annex.

* Special categories of cited documents:

"A" document defining the general state of the art which is not considered to be of particular relevance

"E" earlier application or patent but published on or after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L" document which may throw doubts on priority claim(s) or which is cited to establish the publication date of another citation or other special reason (as specified)

"O" document referring to an oral disclosure, use, exhibition or other means

"P" document published prior to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but later than the priority date claimed

"T" later document published after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r priority date and not in conflict with the application but cite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r theory underlying the invention

"X" document of particular relevance;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novel or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the document is taken alone

"Y" document of particular relevance;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the document is combined with one or more other such documents, such combination being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 document member of the same patent family

Date of the actual complet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

30 SEPTEMBER 2013 (30.09.2013)

Date of mailing of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30 SEPTEMBER 2013 (30.09.2013)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ISA/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Seonsa-ro, Daejeon 302-701,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42-472-7140

Authorized officer

Telephone No.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nformation on patent family memb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2013/006168

Patent document cited in search report	Publication date	Patent family member	Publication date
KR 10-2012-0046571 A	10/05/2012	NONE	
KR 10-2010-0031436 A	22/03/2010	NONE	
KR 10-2008-0044955 A	22/05/2008	KR 10-1284245 B1 WO 2008-060014 A1	09/07/2013 22/05/2008
KR 10-2009-0010260 A	30/01/2009	NONE	

A.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류(국제특허분류(IPC))
G06Q 20/40(2012.01)i, G06Q 20/06(2012.01)i, G06K 7/10(2006.01)i

B. 조사된 분야

조사된 최소문헌(국제특허분류를 기재)
G06Q 20/40

조사된 기술분야에 속하는 최소문헌 이외의 문헌
한국등록실용신안공보 및 한국공개실용신안공보: 조사된 최소문헌란에 기재된 IPC
일본등록실용신안공보 및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조사된 최소문헌란에 기재된 IPC

국제조사에 이용된 전산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및 검색어(해당하는 경우))
eKOMPASS(특허청 내부 검색시스템) & 키워드: barcode, code, transaction, payment, authentication, different, coupon, card, server, gateway, management, issuer, POS(point of sale)

C. 관련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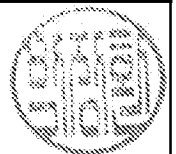
카테고리*	인용문헌명 및 관련 구절(해당하는 경우)의 기재	관련 청구항
A	KR 10-2012-0046571 A (주식회사 케이티) 2012.05.10 요약, 페이지 7-10, 청구항 1-3, 6, 7 및 도면 1-4 참조	1-8
A	KR 10-2010-0031436 A (신교진) 2010.03.22 요약, 페이지 8, 9, 청구항 1, 3, 7 및 도면 1,2 참조	1-8
A	KR 10-2008-0044955 A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2008.05.22 요약, 페이지 5, 6, 청구항 1, 2 및 도면 1-3 참조	1-8
A	KR 10-2009-0010260 A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2009.01.30 요약, 청구항 10,15 및 도면 1 참조	1-8

추가 문헌이 C(계속)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응특허에 관한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 인용된 문헌의 특별 카테고리:
 “A”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정의한 문헌
 “E”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나 국제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선출원 또는 특허 문헌
 “L”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다른 인용문헌의 공개일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이유를 명시)를 밝히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O” 구두 개시, 사용, 전시 또는 기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P” 우선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나 국제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
 “T”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출원과 상충하지 않으며 발명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인용된 문헌
 “X”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 하나만으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Y”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 조합하는 경우로 그 조합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 청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동일한 대응특허문헌에 속하는 문헌

국제조사의 실제 완료일 2013년 09월 30일 (30.09.2013)	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 2013년 09월 30일 (30.09.2013)
--	---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 번호 +82-42-472-7140	심사관 박장환 전화번호 +82-42-481-8463
---	------------------------------------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특허문헌	공개일	대응특허문헌	공개일
KR 10-2012-0046571 A	2012/05/10	없음	
KR 10-2010-0031436 A	2010/03/22	없음	
KR 10-2008-0044955 A	2008/05/22	KR 10-1284245 B1 WO 2008-060014 A1	2013/07/09 2008/05/22
KR 10-2009-0010260 A	2009/01/30	없음	